

마음을 담은 존중, 너와 내가 웃는 지름길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함께 만든 사람〉

이 찬 미
오 영 철
전 윤 선
이 경 희
김 인 속
황 은 선
백 지 현

Contents

마음을 담은 존중, 나와 내가 웃는 지름길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1장. 장애인콜택시란?	1
1) 도입배경 및 목적	3
2) 차량 유형 및 이용기준	3
2장. 장애유형의 이해	7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알아보기	9
2)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유형	10
3) 보조기구 유형과 특성	14
3장. 장애인콜택시 관련 사례	17
1) 이용인 사례	22
2) 기사 사례	26
4장.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교안	29
1) 1회기: 인권감수성	31
2) 2회기: 차이, 차별	34
3) 3회기: 장애인 인권	36
4) 4회기: 쟁점 토론	38
5장. 부록	41
1) 전국 장애인콜택시 연락처	43
2) 전국 장애인인권센터 연락처	50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51

마음을 담은 존중, 너와 내가 웃는 지름길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1장

장애인콜택시란?

1장. 장애인콜택시란?

1) 도입배경 및 목적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 법은 교통약자¹⁾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2) 차량유형 및 이용기준

장애인 콜택시 차량 유형에는 슬로프 차량, 리프트 차량, 다인승미니 버스 리프트, 임차택시²⁾ 등이 있다. 임차택시를 제외한 세가지 차량은 리프트 또는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

<표 1> 장애인콜택시 사진(예시)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2) 일부 지자체는 휠체어승강설비 미장착 차량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인승미니버스 리프트〉



〈임차택시(개인택시)〉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및 기준³⁾**

- 뇌병변, 지체 1, 2급 /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 2급
- 외국인-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 2급
- 복합장애 1, 2급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세부장애에 이용규정 적용

<표 2>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서울시설관리공단, 2015)

구분		제한 없음	휠체어 사용 시 가능	보호자 동반 시 가능
지체	1급	○		
	2급	○		
뇌병변	1급	○		
	2급	○		
호흡기	1급	○		
	2급		○	
자폐	1급			○
	2급			○
정신	1급		○	○
	2급		○	○
지적	1급		○	○
	2급			
기타	1급		○	
	2급		○	

3) 서울시설관리공단(www.sisul.or.kr), 2015,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참조

*** 장애인콜택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문자나 인터넷, 모바일로 모두 접수가능하다.⁴⁾ (별첨 1: 지역별 콜센터 연락처 참고) 콜센터로 접수된 내용은 접수 순서에 따라 차량위치정보를 파악하며, 이용자와 가장 근접한 차량과 연결된다.

4) 서울시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마음을 담은 존중, 너와 내가 웃는 지름길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2장

장애유형의 이해

2장. 장애유형의 이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장애의 유형을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89년 제정 당시의 유형으로부터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까지 포함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2)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유형⁵⁾

가. 지체장애

인체의 골격, 근육, 신경 등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의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는 체간, 상지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지체장애에는 신체 근육들이 진행성 위축으로 인해 근력약화를 동반하여 보행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근육병 장애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호흡근육이 약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호흡량이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축적 될 위험이 있다. 근육이 약해져있는 상태에서 염증이나 폐렴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호흡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어나 호흡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뇌병변장애

뇌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뇌성마비,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뇌성마비는 태어나 영유아 등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 되는 것이며,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 조직에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다.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지기능, 언어능력, 운동기능, 사회적 발달 등을 종합하여 표준화한 지능검사, 사회성숙성 검사를 통해 산출된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약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며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적응기능, 지역사회활동, 건강 및 안전기능 등에 제한을 보일수 있다.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3, 장애인권 상담메뉴얼 version 3.0 참조

*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⁶⁾ 방법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시 항상 명확하고 느리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기초되어야 하며, 대화 주제를 옮기기 전에는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호의적인 태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 ㄴ. 지적장애인의 대답을 듣고자 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 ㄷ. 한번에 제공하는 대화의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어려워 할수 있다.
- ㄹ.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ㅁ.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 ㅂ. 지적장애인이 응답하려고 하는 바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ㅅ. 말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시각적 보조물을 사용한다.

라.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는 대체로 생후 3세 이전에 발생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된 행동과 제한된 관심을 나타내는 발달장애를 말한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 때문에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어려워 지능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감정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틀에 박힌 놀이를 반복하고 동일성 유지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는 지적장애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자폐성 장애인 전체가 지적장애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재가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의사소통 지원방안 연구, 2012, 한국지적장애인복지회 참조

* 자폐성장장애인과의 의사소통⁷⁾

- ㄱ. 의사소통에 있어 명칭사용은 '나', '너', '우리', '당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ㄴ. '잠시', '꽤', '대단히', '조금'과 같은 용어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 ㄷ. '왜', '어째서', '어느 정도'와 같은 유상적인 질문이나 긴 문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ㄹ. 자해행동을 강제적으로 제지하지 말아야 한다. 자해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과도하게 제지하게 되면 자폐성 장애인의 자해행동의 강도는 더욱 강하게 된다.
- ㅁ. 장애특성상 주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자폐성 장애인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주위에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마. 정신장애⁸⁾

정신장애는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등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상행동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어 사회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7)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자료집, 2012,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참조

8) 이러한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모두 다르며, 그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정신장애 용어 정리⁹⁾

- ㄱ. 조현병(정신분열증): 환각 등의 지각장애로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뎠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로 나타난다.
- ㄴ. 양극성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좌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된다.
- ㄷ.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증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같은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 ㄹ. 반복성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좌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이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신장장애

신장 기능이 90%이상 소실되어 투석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해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신장 기능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신장장애는 투석요법에 따른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따르고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고통이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고, 이전과 달리 약화된 신체적 기능으로 인해 심리적인 무력감이 커질수 있다.

바. 시각장애

눈의 기능상 결함 등으로 시각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시력과 시야의 각도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을 구분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잔존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9)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4, 장애인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참조

3) 보조기구의 유형과 특성

보조기구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정신적 영역을 도와 교육, 직업, 사회, 일상생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이다. 이는 장애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장애 유형별 다양한 보조기구가 있으나 이 책자에서는 일부 보조기구만을 소개하도록 한다.

<표 4>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사용하는 보조기구

분류	사진	설명 및 특징
지체, 뇌병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휠체어 탑승시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하며 급출발, 급 정차시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스쿠터 보행 및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크기와 부피가 전동휠체어보다 크므로 승하차시 유의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휠체어¹ 반신장애 또는 보행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승하차시 양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잠궈야 한다.

분류	사진	설명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휠체어2 주로 외상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로 일반 휠체어보다 크기가 조금 큰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휠체어 아동용 다기능 휠체어로 아동 체격에 맞게 만들어져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보조차 장거리 보행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워커와 휠체어가 겸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치(목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발 지팡이

마음을 담은 존중, 너와 내가 웃는 지름길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3장

장애인콜택시 관련 사례

3장. 장애인콜택시 관련 사례

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에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불편 및 차별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 문제, 이용자와 운전자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이 가장 많은 불편사례로 꼽힌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부족의 문제는 결국 이용자의 대기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기시간이 지연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콜택시는 지역별로 1~2급¹⁰⁾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¹¹⁾ 현재는 이용수요에 비해 공급대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입률 18.7%)¹²⁾ 등의 대중교통 편의 시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법정기준은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이 상이하고, 그 대상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보급대수 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래의 장애인콜택시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대수 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11개 시도¹³⁾)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1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2)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2,552대의 18.7%를 차지함(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3) 법정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로 64.7% 이다.

〈표 5〉 장애인콜택시 시도별 현황¹⁴⁾

구 분		법정 기준대수	실제 운영대수	도입률(%)
합 계		2,692	2,298	85.4
1	서울	444	446	100.5
2	부산	185	198	107
3	대구	129	103	79.8
4	인천	139	140	100.7
5	광주	76	80	105.3
6	대전	79	44	55.7
7	울산	49	32	65.3
8	세종	8	6	75
9	경기	543	475	87.3
10	강원	108	65	60.2
11	충북	103	100	97.1
12	충남	134	59	44
13	전북	135	86	63.7
14	전남	147	64	43.5
15	경북	182	44	24.2
16	경남	193	316	163.7
17	제주	38	40	105.3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지자체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된 법정 대수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구리, 안성, 여주, 가평, 과천 등 5개 지자체는 아예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별 교통약자의 복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¹⁵⁾ 수도권 이외의 시군구 단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더욱 불편한 상황이다.

14) 2014년 말 기준(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5) 2015.12.8. 경향신문 기사 - 경기 5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한 대도 없어

〈표 6〉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달 지자체 현황¹⁶⁾

구 분		법정 대수	운영 대수	도입률(%)	구 분		법정 대수	운영 대수	도입률(%)
1	안산시	32	31	96.9	8	의왕시	6	4	66.7
2	안양시	23	17	73.9	9	양평군	9	8	88.9
3	남양주시	27	4	14.8	10	구리시	9	0	0
4	시흥시	16	10	62.5	11	안성시	12	0	0
5	파주시	20	10	50	12	여주시	9	0	0
6	광주시	14	9	64.2	13	가평군	8	0	0
7	하남시	7	5	71.4	14	과천시	3	0	0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넘어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일을 하고,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수요에 비해 운영대수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운영대수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 등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법정대수 부족 문제 이외에 가장 많은 불편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와 운전자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서로에 대한 비난, 차별, 존엄성의 훼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써, 그리고 운전자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예방센터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콜택시 운전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와 종사자의 실제 사례를 활용한 인권교

16) 2015.12.8. 경향신문 보도자료, 〈자료출처 : 경기도〉

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통한 소통, 공감, 존중, 연대를 이끌어내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관련 TF팀에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1기 인권강사단을 비롯하여 인권단체 활동가, 서울시장애인콜택시기사분 등이 참여하였다. 콜택시 이용 사례를 활용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이용자와 운전자간의 ‘존중과 연대의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어, 교육 참여자가 직접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총 4회기(인권감수성, 차이차별, 장애인 인권, 쟁점토론) 교안을 제작하였다.

1) 이용인 사례

<사례1> 우리는 왜 앞좌석을 이용할 수 없나요?

“경직성 장애인의 경우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장애유형은 다리의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아 몸을 짝 피고 눕거나 서는 등 하나의 자세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 보다 앞좌석에 앉는 것을 더 선호할 때가 있다. 그런데 콜택시 앞좌석에는 이용인들을 앉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기사님들의 가방부터 시작해서 의복, 세면도구까지 온갖 개인 짐들이 쌓여져 있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에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앞좌석은 앉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생각해보기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일반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특성에 맞게 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성 척수염 장애인의 경우 앞좌석을 뒤로 최대한 밀고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등 장애유형별 특성과 편의에 맞게 탑승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2> 급출발, 급정차, 난폭운전! 근육장애인에겐 고통이에요.

“근육장애인은 온 몸에 힘이 없는 장애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증의 경우 혼자서는 목조차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승객은 차에 탑승했을 때, 운전자의 운전습관은 근육장애인에겐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무런 신호조차 주지 않은 채 급출발을 하거나 급정차를 하여 당황하게 하는 운전기사님들이 있다.”

* 생각해보기

승차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특성을 기사님들과 얘기하여 운전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콜센터에 장애 특성을 입력한 후, 콜 연결 시 단말기에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급출발, 급정차, 끼어들기, 과속운행 등 운전형태를 조심히 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3> 안전벨트 착용 시 신체접촉, 불편할 수 있어요!

“기사님들은 콘택시를 이용할 때, 항상 안전벨트를 내 몸을 감아 가슴 뒤로 착용해주시는데, 남자기사님일 경우에는 담배냄새도 나고...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 기사님들은 안전을 위해 그런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생각해보기

안전벨트 착용 시, 어떤 방향으로 매는 것이 편한지 이용인에게 물어보고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는 이용인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흡연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껌이나 가글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4> 10분 대기조, 못 지키면 1주일 이용금지!

“장애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콘택시 기사님들은 기다리게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10분 대기조’ 라고 해서 콘택시 기사님이 도착한 후 10분이 지나면 1주일 동안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한번 늦었다고 이동수단이 비장애인처럼 마땅치 않은 장애인들에게 ‘콘택시 이용금지령’ 을 내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제도가 아닐까?”

<사례5> 이동하는 시간 10분! 대기시간은 2시간.

“콘택시를 부르면 평균 2시간 이상 대기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한번은 저녁에 콜 신청했는데 5시간 정도를 역 안에서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탄 적이 있다. 대기시간이 날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 어딜가나 걱정꺼리이다. 콜택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 생각해보기

콜택시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배차수가 적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급여와 노동 강도 및 복지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례6> 콜택시 이용에 수급여부, 가족여부가 왜 필요할까?

“콜택시 최초 이용 시에는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 신청서엔 기초생활수급 여부, 장애인 증명서, 승용차 소지여부, 가족여부, 보호자 동승여부 등을 적는 항목이 있다. 콜택시 탑승과 연관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급여부, 승용차 소지 여부, 가족사항 등 콜택시 탑승과 연관 없는 개인의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 개인정보요구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 생각해보기

이용신청서에는 콜택시 이용 시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애유형과 특성, 보장구 사용여부, 이용자 전화번호 등은 기재 하되, 이와 관련 없는(예-수급여부, 승용차 소지여부, 가족여부 등)정보들은 최대한 개인정보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7> 중구난방 콜택시 승강장!

“전국에는 기차역과 지하철역 부근에 버스와 택시 승강장이 마련되어 있다.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승강장 준은 따로 구비되어있지 않아 콜택시를 탈 때 어느 곳에 정차해서 콜택시에 승차해야 하는지 종종 헷갈린다. 기사가 알고 있는 승차장소와 이용자가 기다리는 장소가 서로 달라 이용에 어려움을 종종 겪을 때가 있다.”

* 생각해보기

역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콜택시 존을 따로 설치하여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 내 출구 안내판에도 장애인 콜택시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여 탑승 장소를 일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1호선 서울역에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안내 표시가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어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례8>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이 필요해!

“버스나 기차의 경우 장애인 손님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승차거부를 하는 때가 많다. 결코 버스나 기차만이 아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에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응대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늦었다고 버럭 화를 내거나 장애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례9> 과도한 친절은 No! No!

“대부분의 기사들은 시각장애인 안내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기사와 동승했을 경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등이나 어깨를 잡고 안내하거나 손을 잡고 안내하는 경우, 물어보지 않고 선뜻 도와주시는 기사님들의 행동 때문에 당혹스러운 때가 많다. 과도한 배려가 나에게 무척 힘들게 느껴지는 때이다.”

<사례10> 활동보조인이 아닌 ‘나의 의견’ 을 들어주세요

“장권을 이용하다보면 어떻게 탑승을 해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택시를 하는 이용자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활동보조인이나 동승자의 의견을 묻을 때가 있다. 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활동보조인이나 동승자가 아닌 ‘내 의견’ 을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또, 함께 동승하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부르는 때가 많은데, 보호자라는 명칭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동승자를 보호자라고 칭하면 장애인은 주체적이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는 듯하다.”

* 생각해보기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업무의 특성상,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주장을 '배려한다'라는 입장에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배려는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배려가 될 수 있으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입니다. 장애인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안 보인다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자주 가는 길의 경우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요금도 조금 덜 나오고,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사 중 일부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시각장애 승객에게 묻지 않고 그냥 운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요금과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있다.”

* 생각해보기

이용인이 콜택시에 탑승할 경우 주로 어떤 길을 이용하는지, 어떤 길을 통해서 도착지까지 가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합니다.

2) 기사사례

<사례/> 저는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번은 이용인을 태우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늦었으니 활동보조인을 중간에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콜택시 운영 규정상 중간 경유를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용인은 ‘평생 운전질만 해 먹어라!’ 라고 하며 버럭 화를 냈다.”

* 생각해보기

<사례2> 목설! 무시! 비하 발언, 우리도 힘들어요~

“한번은 이용인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나와서 30~40분 동안은 기다린 적이 있었다. 참다 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용인과 마주쳤다.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인은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어따 대고 훈계야!, 당신! 옷 벗고 싶어?’ 라고 하며 목설을 남발하였다.”

*** 생각해보기**

<사례3> 장애인콜택시가 정류장을 정차하는 버스인가요?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중간에 경유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규정을 악용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집사님들 목사님들 집에 일일이 정차해서 다 태워서간 사례도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로 가득 찰 때가 있다.”, “콜택시 비용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한번은 가양동에서 수유리 국립재활원까지 이동을 하는데, 앙복으로 택시비가 3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이용인은 한번도 내리지 않고 동반인만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있었다.”

*** 생각해보기**

<사례4> 저는 ‘짐꾼’ 이 아닙니다.

“어떤 이용인 분께서는 콜택시 탑승을 하면서 짐을 엄청나게 실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세탁기나 청소기 같은 개인 짐을 실어달라고 하거나 간이침대까지 넣어달라고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내가 콜택시 기사인지 짐을 실는 사람인지 당혹스러운 때가 있다.”

*** 생각해보기**

<사례6> 콜택시에 애완동물이 웬말이야!

“장애인 콜택시에 애완동물 탑승은 금지되어 있다. 어느 날 고객님은 모시고 목적지를 행해서 가고 있는데 차속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울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뒤돌아보니 쇼피백 안에 강아지를 숨겨서 탑승을 했던 것이었다. 차마 운전 도중 하차를 할 수 없어서 조용히 고객님께 차량 규정에 대해 말씀 드렸다. ‘고객님 애완동물은 몰래 탑승시키면 다음부터는 탑승 거절입니다’ 고 말이다. 그런데 애견동반 고객은 ‘다른 기사님은 다 태워주는데 당신은 유별나네요.’ 하면서 핀잔을 주었다. 더 이상의 언쟁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목적지 까지 운행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고객의 모습이 속상했다.”

* 생각해보기

<사례7>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성희롱 발언, 하지마세요

“한번 나이드는 분의 탑승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는 재력도 있어서 자기 애인을 하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너무 어이없고 항당한 말을 계속 하기에 못 들은 척 하고 말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두 명의 여기사승이 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여성 운전원들은 고객님의 야한 말투들을 어떻게 녹음 할 수도 없고 대략 남감한때가 종종 있다. 또한 남자 고객님은 반말과 명령식에 말투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 생각해보기

<사례8> 민원 넣습니다!!

“어느 고객님은 중간에 가다가 본인의 어머니를 태워드려 한다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차문을 활 췌게 닫아버리면서 무조건 민원을 넣겠다고 한다. 그 후 보호자로부터 계속해서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이 왔다. 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설명을 한 것뿐인데,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 생각해보기

마음을 담은 존중, 너와 내가 웃는 지름길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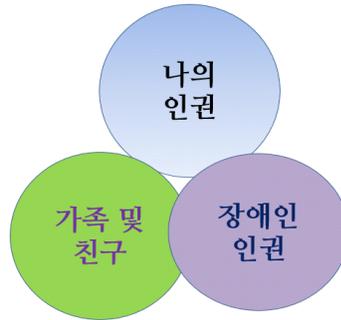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교안

4장.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교안

1) 1회기: 인권감수성

<p>교육목표</p>	<p>소통과 공감, 그리고 대안</p> <p>일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차별을 발견하고 나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을 되짚어본다.</p>
<p>진행방법</p>	<p>1) 몸풀기 마음열기 - 길따라 삼천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사람은 여행자, 한 사람은 가이드가 되어 동그라미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좀 더 위로!', '좀 더 아래로!' '90도 방향으로 이동~' 등 가이드는 선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할 것이고, 여행자는 눈을 감고 그 설명을 따라 이동한다. - 여행자와 가이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칠판에 느낀 점을 적어 본 후 가이드가 어떤 말을 해줄 때 가장 편안했는지, 어떤 말을 했을 때 불편하고 짜증났는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행동도 누군가에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 맨 마지막에 활동을 정리하여 '이 여행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은 여행자도, 가이드도 아닌 '우리 모두'라는 것을 알려주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2) 세계인권선언문 읽기



- 세계인권선언문 1조부터 30조까지를 읽고 '나'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 이 때, 강사는 보드마카로 나와 주위사람(자녀 또는 부인 등), 장애인 당사자로 나누어 각각에게 필요한 조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한다.
- 특히,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조항을 살펴보면서 '세계인권선언문에 있는 30조항이 모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처럼 인권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사람, 장애인 당사자 등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나의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온 권리 조항을 하나씩 설명하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본다. 특히, 콜택시 기사님들은 장애인의 '이동 할 권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 이 활동은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인권의 의미, 이것만은 기억해요~

-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주목하는 자세
-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
- 인권은 감추어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
- 인권은 질문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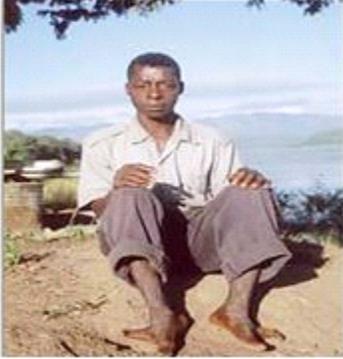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감수성 ppt 자료 - '길따라 삼천리'에 사용 할 동그라미 그림 - 쉽게 읽는 세계인권선언문 30조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콜택시 기사로써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한다. -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나의 인권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2) 2회기: 차이, 차별

<p>교육목표</p>	<p>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p> <p>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차별에 맞서온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p>
<p>진행방법</p>	<p>1) 내가 경험한 차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여자 라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영어를 못해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돈을 못 벌어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피부색 이 달라서</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경험한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세계인권선언 2조('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를 설명하며 어떤 이유에도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얘기한다. - 장애인 표지판의 변화를 보며 인식의 프레임 자체가 갖는 차별성에 대해 이해한다. 특히,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 장애인권의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교육권, 노동권, 자기결정권 등)가 어떤 현실에 머물러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한 후, 결국 서로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p>2) 차별과 맞서온 장애인 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관련된 법에는 활동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 후, 이와 같은 법들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장애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 자각할 수 있게 한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차별 ppt 자료 - '내가 경험한 차별'에 사용 할 포스트잇, 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의 범주가 과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교육에서는 차별의 심각성보다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차별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더불어 장애인콜택시 기사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

3) 3회기: 장애인 인권

<p>교육목표</p>	<p>장애인인권 이해하기</p> <p>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본 후, 장애개념의 변화와 패러다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진행방법</p>	<p>1)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바도마 부족의 사진과 태국의 카렌족 등의 사진을 보며,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장애는 개인의 손상으로만 정의될 수 없고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엘리베이터 앞에서와 계단 앞에서의 장애적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장애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초성으로 인권의 가치 찾기' 활동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p>2) '장애'하면 떠오르는 단어 적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적어보고, 그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 불쌍함, 시설 등 장애를 바라보는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에서 비취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살펴본다. 사회적, 구조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 오지 않았음을 생각해본다. - 그동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임을 설명 한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생각해본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장애인콜택시 기사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존중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권 ppt - '장애하면 떠오르는 단어 적기'에 사용할 포스트잇, 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를 가짐으로써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장애하면 떠오르는 단어 적기'나 '초성으로 인권의 가치 찾기' 등의 활동을 진행 할 때, 그 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4회기: 쟁점토론

<p>교육목표</p>	<p>사례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p> <p>장애인콜택시 이용 사례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입장과 기사 입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며, 서로가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본다.</p>
<p>진행방법</p>	<p>1) 콜택시 이용사례 살펴보기</p> <div data-bbox="586 595 982 760" data-label="Diagram">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택시 이용사례, 기사사례 카드를 제시해준 후,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읽고 각 1개씩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예시: 대기 시간은 언제까지가 합당한가, 이용자의 짐은 어디까지 실어줘야 하는가, 콜택시 이용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나 등... -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례에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 논의 한다.(원인-문제-대안 제시) - 각 조에서 진행한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가 나누었던 논의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p>2) '이동권'의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준 후,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 이동권은 단순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개념을 넘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토론 ppt 자료 - 사례카드(이용자 사례, 기사 사례) - 토론 활동에 필요한 전지, 매직 등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가 한 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끌어 나간다. - 선정된 사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사전에 사례에 대한 배경을 숙지해 갈 수 있도록 하며, 보충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강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사례에 대한 대안을 강사가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존중한다.

마음을 담은 존중, 너와 내가 웃는 지름길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5장

부 록

5장. 부록

1) 전국장애인콜택시 연락처

전국	지자체	전화	수량 ¹⁷⁾	위탁기관
특별시	서울	1588-4388	446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광역시	부산	051-466-2280	198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	032-1577-0320	140	인천교통공사 콜택시 운영처
	대구	1577-6776	103	대구시시설관리공단
	광주	062-600-8900	80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울산	052-292-8253	32	(사)울산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협회
	대전	1588-1668	44	(사)대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특별 자치시	세종	044-866-2220		세종시 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김포시	1899-2008	14	김포도시공사
	고양시	1577-5909	48	고양도시관리공사
	구리시	-	0	-
	과천시	-	0	-
	군포시	1899-4428	1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광명시	02-2688-2582	20	(사)광명시 사회복지 협의회
	광주시	1666-6636	9	도시관리공사
	남양주시	1666-5525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두천시	031-862-1091	7	교통약자콜벤/ 동두천 모범 운전자회
	부천시	1588-3815	4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지자체	전화	수량 ¹⁷⁾	위탁기관
	성남시	1577-1158	42	(주)성남시내버스
	시흥시	031-488-6822~4	10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수원시	031-523-5525	48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	031-389-5200	1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산시	1588-5410	26	안산도시공사
	오산시	031-378-7816~7	9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인시	1588-6585	44	용인도시공사
	안성시	031-674-8050	1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	031-861-9977	7	(주)한영택시
	평택시	031-651-4700	22	평택도시공사
	의정부시	1577-2515	2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	1899-0017	13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의왕시	031-462-8253	2	교통약자콜벤
	파주시	1599-6199	1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하남시	031-795-2701~3	5	하남시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화성시	1588-0677	24	화성도시공사
	포천시	031-536-2000	11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	031-835-1155	4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	031-581-2302	2	시각장애인협회
	양평군	1899-8268	8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여주시	031-882-0747	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준비중)

전국	지자체	전화	수량 ¹⁷⁾	위탁기관
강원도	원주시	광역지자체 통합운영 1577-2014	13	
	춘천시		10	
	속초시		3	
	강릉시		8	
	동해시		2	
	삼척시		3	
	태백시		3	
	철원군		2	
	화천군		1	
	양구군		1	
	고성군		2	
	인제군		2	
	양양군		2	
	홍천군		4	
	횡성군		3	
	평창군		3	
	영월군		2	
정선군	1			
충청남도	서산시	041-665-1111	8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산지회
	아산시	041-546-1503	11	아산장애인단체연합회
	천안시	041-552-0078	12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공주시	041-852-5858	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주시지회
	보령시	041-933-3517	2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논산시	041-733-0337	1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
	계룡시	042-841-9990	1	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

전국	지자체	전화	수량 ¹⁷⁾	위탁기관
	당진시	041-358-9787	6	당진시 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	041-672-1605	2	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부
	예산군	041-335-3330	3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홍성군	041-634-0026	4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홍성군지회
	청양군	041-942-2111	3	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
	부여군	041-836-2155	1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
	서천군	041-951-0999	3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금산군	-	0	-
충청 북도	청주시	1588-8488	47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주시	043-857-6161	16	(사)행복천사
	제천시	043-644-5553	1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보은군	043-544-1211	3	지체장애인협회 보은군지회
	옥천군	043-733-7589 043-733-5546 043-731-1020	8	(사)전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 옥천군지회
	영동군	043-744-2220	2	장애인심부름센터
	증평군	043-836-4627	2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증평군지회
	진천군	043-533-5758	3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괴산군	043-832-7775	3	(사)괴산군장애인연합회
	음성군	043-873-7744	1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단양군	043-422-1299 043-070-7755	3	단양군사회복지사협의회

전국	지자체	전화	수량 ¹⁷⁾	위탁기관
전라 북도	전주시	063-271-2727	35	(사)전북곰두리봉사대
	군산시	063-471-8187	10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정읍시	063-536-9870	6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익산시	063-853-1334	9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남원시	063-626-1911	4	장애인협회
	김제시	063-544-8270	5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
	완주군	063-261-7119	4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진안군	063-433-4223	2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진안지부
	무주군	063-322-9414	1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장수군	063-351-4967	1	장수군 장애인 연합회
	임실군	063-644-4000	2	(사)임실군장애인연합회
	순창군	063-653-0633	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고창군	063-561-2338	3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
	부안군	063-583-1010	2	지체장애인협회 콜택시
전라 남도	여수시	061-692-3636	12	한국신체장애인 전남복지회
	광양시	061-761-1245	8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	061-751-8181	12	남도교통
	나주시	061-331-9700	3	남도교통
	목포시	061-242-5757	12	목포시장래인연대
	영광군	064-343-9931	2	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	061-393-1989	1	경제교통과

전국	지자체	전화	수량 ¹⁷⁾	위탁기관
	담양군	061-383-1010	1	담양군장애인협회
	곡성군	061-363-3374	1	곡성군장애인협회
	구례군	061-782-2014	1	구례군청
	함평군	061-324-4222	2	함평군장애인협회
	신안군	061-245-6152~3	1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	061-372-6700	2	화순군장애인협회
	무안군	061-454-8818	2	무안군장애인협회
	영암군	061-470-2187		2016년 준비중
	장흥군	061-863-8960	3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
	보성군	061-852-1525 061-862-4436	2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	061-430-3114	1	강진군장애인협회
	해남군	061-536-8811	1	-
	진도군	-	0	-
	완도군	061-555-8582	1	개인택시지부
	고흥군	061-835-0677	1	고흥군장애인단체
경상 북도	문경시	054-555-4157	0	지체장애인협회 (준비중)
	김천시	1899-9547	3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영주시	054-634-5597	2	-
	안동시	054-856-4422	1	해피콜/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	054-480-2343	6	구미시시설공단
	포항시	1800-9300	11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영천시	054-333-3535	2	위탁예정
	상주시	054-536-6655	3	(사)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 상주지회
	경주시	054-777-2811~2	7	장애인단체협의회
	경산시	053-802-8998	8	교통약자콜벤
	봉화군	054-673-2744 054-272-1780	2	지체장애인협회, 교통협회
	울진군	054-782-5775	1	지체장애인협회

전국	지자체	전화	수량 ¹⁷⁾	위탁기관
	예천군	054-654-7227	2	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	-	0	-
	영덕군	054-732-3544	1	시각장애인협회
	청송군	-	0	-
	의성군	054-834-1442	1	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	-	0	-
	칠곡군	054-972-5396	2	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	054-931-5506	1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	054-955-8288	1	지체장애인협회
	청도군	-	0	-
	울릉군	054-791-1021	0	지체장애인협회(준비중)
경상 남도	밀양시	광역시자체통합운영 1566-4488	20	경상남도 택시 운송 사업조합
	양산시		20	
	김해시		50	
	창원시		100	
	진주시		22	
	사천시		9	
	통영시		20	
	거제시		26	
	합천군		5	
	거창군		4	
	함양군		4	
	창녕군		5	
	산청군		4	
	의령군		4	
	함안군		6	
하동군	5			
고성군	5			
남해군	7			
제주도	제주전역	064-756-8277	40	-

17) 2014년 말 기준(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 전국 장애인인권센터 연락처

지역	주소	연락처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보건복지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02-2675-5364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02-3453-9527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22(인계동) 4층	031-287-1134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간석동, 인천사회복지회관) 703호	032-881-8298
대전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로 913(삼성동) 온누리빌딩 3층	042-672-1482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석현동), 세븐에이치타워 4층	061-284-6705
광주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248번길 39 각화동종합상가 217호	062-531-042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29길 35(중화동) 태능에샘빌 2층 209호	070-4680-120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소	대구시 남구 명덕로 8길 70 대구대학교 재활관 B 1101	053-557-045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부산시 중구 대영로 235(영주동) 제일빌딩 6층	051-465-448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지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 내 129호	055-283-912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북지소	경북 경산시 경산로 136(사정동)	053-818-7447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2014.11.22.] [법률 제12638호, 2014.5.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행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행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정 2012.6.1.>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6.1.]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전문개정 2012.6.1.]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2조(기능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4조(노선서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 2015.7.29.] 제16조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手話)·통역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군·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2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23조(불법시설물의 정비)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제5장 보칙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2.6.1.]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본조신설 2012.6.1.]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1.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4조 삭제 (2012.6.1.) 부칙 (제12638호, 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음을 담은 존중, 너와 내가 웃는 지름길

- 장애인콜택시 기사 대상 인권교육 -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 | www.cowalk.or.kr / www.15775364.or.kr

연락처 | 02) 2675-5364 / 02) 2675-8153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